

2024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Startup Water 2024) 참가자(팀) 모집 공고

물산업 혁신 및 창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고 혁신 아이디어 및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을 통해 물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4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STARTUP WATER 2024)」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8월 1일
환경부 장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1 목 적

- 물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산과 창의적 아이디어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여 물산업 혁신창업 문화 조성

2 개 요

- 접수기간 : '24. 8. 1(목) ~ '24. 9. 4(수) 18:00까지
- 신청대상 : 전 국민 * 분야별 참가자격 참고
- 신청방법 : 스타트업워터 홈페이지(www.startupwater.net) 접수
- 주최 및 주관 : 환경부 / 한국수자원공사
- 후원 : 특허청, 창업진흥원, 한국물산업협의회, 한국물포럼, UN SDGs협회

3 주요내용

□ 참가자격

- 아이디어 부문 : 대학(원)생(학생부문) 및 만 19세 이상 예비창업자 (일반부문) 개인 또는 팀

구 분		참 가 자 격
아이디어 부문	학생부문	▪ 대학(원)생 (재학생, 휴학생 포함)
	일반부문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예비창업자 등

* 1인 단독참가도 가능하나 평가단계에서 팀 구성 및 역량 평가 반영

- 사업화 부문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창업여부 적용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범위
 - ※ 별첨.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
 - 사업개시일의 적용기준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 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 ※ 2개 이상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일 기준

□ 참가 제외대상

- 동일(유사) 아이템으로 '20~'23년도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또는, '24년도 타 기관(단체) 주관의 창업 경진대회 수상자(팀)
 - * 팀장과 팀원을 포함하여 신청서상 기재된 참여자 수상내역 모두 해당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자(기업) 또는 아이템
 -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특허검색(www.kipris.or.kr)에서 아이템 중복 확인 필수
- 기타 본 대회 추진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아이템

□ 공모부문

구 분	세부분야(예시)
물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한기후에도 안전한 물관리 시스템 구축 - 수자원 확보 및 활용, 물재해(가뭄, 홍수) 대응 - 스마트 기술기반 물관리 혁신 및 디지털기술 활용 시설 안전관리 - 물환경(조류, 녹조) 관리 및 댐·하천 수생태 복원
물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수요를 충족하는 고품질 물공급 - AI, 디지털트윈 등 혁신기술 중심 물관리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기반 운영관리 - 고순도 산업용수 생산, 대체수자원 개발, 해수담수화 및 재이용 - 기후변화에 안전한 물공급, 수돗물 인식개선 및 음용률 향상 - 고품질 수돗물 생산 및 급수 취약지역 지원
물특화 (물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특화도시 조성 및 물에너지 확대 - 물에너지(수력, 수상태양광, 조력, 수열, 그린수소 등) 개발 및 활용 - 물순환 전과정 에너지 효율화 및 전력시장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운영관리 - 도시 물순환 개선 및 국가 탄소중립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기술

* 정책제안 또는 사업화 가능한 아이디어 공모

□ 지원 및 시상규모

○ 아이디어 부문 : 총 9팀 (총 상금 17,000천원)

구 분	훈 격	시상규모(수량)		부 상
		학생	일반	
대 상	환경부장관	1개 팀		5백만원
최우수상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1개 팀		3백만원
우수상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창업진흥원 원장	2개 팀		각 2백만원
장려상	KWP회장, KWF총재, UN SDGs협회장	5개 팀 내외		각 1백만원

* 상금에서 세액 공제 후 지급

** 아이디어부문 장려상의 경우 선정결과에 따라 시상규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사업화 부문 : 총 9팀 (총 상금 85,000천원)

구 분	훈 격	시상규모(수량)	부 상
대 상	환경부장관	1개 팀	사업화자금 각 2천만원
최우수상	특허청장	1개 팀	
우수상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창업진흥원 원장	2개 팀	
장려상	KWP회장, KWF총재, UN SDGs협회장	5개 팀 내외	각 1백만원

* 우수상 이상은 사업화자금 전액 지원, 장려상은 상금에서 세액 공제 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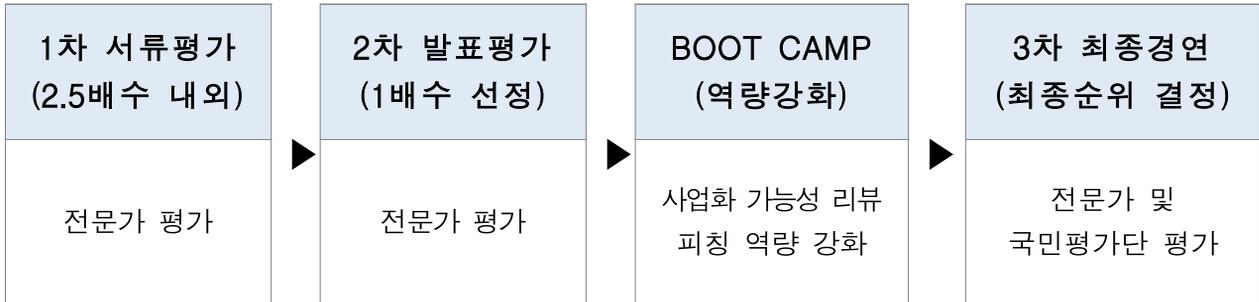
** 사업화부문 장려상의 경우, 선정결과에 따라 시상규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입상팀 특전 (공통)

- K-water 협력스타트업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 창업지원 및 사업화 지원(선정시 실증화 지원금 최대 15백만원 지원)
- Test-Bed 인프라 활용 우수기술 실·검증 지원
- K-water 물산업 펀드 연계투자유치 추천

4 심사절차

□ 심사절차 : 총 3단계 평가(서류 → 발표 → 최종) 및 부트캠프 운영



* 2차 발표평가 통과팀은 BOOT CAMP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최종경연에서 순위 결정

- (1차, 서류평가) 공모 신청 시 홈페이지로 제출된 제안서(아이디어 부문) 및 사업계획서(사업화 부문)를 기준으로 서면 평가
- (2차, 발표평가) 서류평가 선정팀을 대상으로 발표(현장) 평가
 - ※ 서류평가 선정팀 대상으로 추가 발표자료 제출 안내 예정이며, 참가팀의 팀장 (대표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 발표시간 15분 분량의 PPT(또는 PDF) 파일 제출
- (3차, 최종경연) 2차 평가를 통과한 부문별 평가점수 상위 4팀(총 8팀) 대상 발표경연 및 순위 결정 (아이디어 부문 4팀, 사업화 부문 4팀)
 - ※ 최종경연 진출팀 대상으로 추가 발표자료 제출 안내 예정이며, 참가팀의 팀장 (대표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 발표시간 5분 분량의 PPT(또는 PDF) 파일 제출

□ 심사항목 : 기술의 우수성, 기존 기술대비 차별성 및 혁신성, 물관련 사업 아이템의 적합성, 대표자 및 팀 보유역량, 실현 가능성 등

5 추진일정(안)

진행절차		추진 내용	일정
아이디어	사업화		
↓			
사업 공고		▶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24. 8. 1(목) ~
↓			
신청·접수		▶ 참가신청 : www.startupwater.net	~'24. 9. 4(수)
↓			
1단계 서류평가		▶ 혁신성, 적합성 등 서류평가	'24년 9월 중
↓			
2단계 발표평가		▶ 혁신성, 실현가능성 등 발표평가	'24년 9~10월
↓			
3단계 BOOT CAMP (역량강화)		▶ 역량강화 액셀러레이팅 : 사업화 점검 및 피칭 역량 강화	'24년 10~11월
↓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	최종경연 및 시상식	▶ 아이디어·사업화 부문 최종 경연 : 전문가 + 국민평가단 평가	'24년 11월 중
	사업화 지원	▶ 최종 입상팀 사업화 지원 : 테스트베드 실·검증, 협업과제 매칭 및 해외진출 지원	'24년 12월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24. 8. 1.(목) ~ 2024. 9. 4.(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공모전 웹사이트 접수(<http://www.startupwater.net>)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신청자로 인해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전 미리(2~3일 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 통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양식1) - 참가서약서 1부 (붙임 양식2)
아이디어 부문	- 아이디어 부문 신청서 1부 (붙임 양식3) - 아이디어 부문 제안서 1부 (붙임 양식4)
사업화 부문	- 사업화 부문 신청서 1부 (붙임 양식5) - 사업화 부문 사업계획서 1부 (붙임 양식6)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제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 진행 시 제반서류의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출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K-water 물산업혁신처 (042-629-2515, 2516)

- 모집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공모전 신청자에게 있음
- 모집공고문 관련 규정 위반사항 또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허위 기재·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이 제한될 수 있음
 - 창업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임금체불, 세금 체납,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입상팀 특전 중 사업화 및 실증화 지원은 입상한 창업기업 대상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하며, 관심기업은 사전에 준비 요망
 - * 별도 심의절차에서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 미충족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수상기업은 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별첨

창업여부 기준표

□ 창업여부 기준

신청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업종	창업아님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업		
법인기업	자회사 여부	법인 주주(임원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회사형태 변경	동종업종 유지		창업
		이종업종 변경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업아님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 관련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③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